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옥동 이예로 램프)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산림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 134-3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02,920,000	1,556,500,000	1,415,000,000	141,500,000	46,420,000	22,608,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 \times \text{값}(68,592,664\text{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2)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6.(목) 10:00
개찰일시	2026. 8. 6.(목) 11:00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록한 업체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전체 입찰금액)의 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자와**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입찰 참가 불가, 단독참가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중복 입찰 참가 불가

마. 대표사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8. 5. (수) 18:00까지**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어기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7.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산림사업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1,384,886,264원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257,927	10,034,157	6,419,627	1,318,488	19,636,455	17,206,800	719,210

A 값 = 68,592,66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석면분담금은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과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석면분담금 전액을 감액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대가를 청구시에는 부과대상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예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자.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과 (☎ 052-229-2563)
- 내역서, 지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7. 21.

울산광역시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